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사!"

# 국 무 조 정 실

전 산 망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 3703-3891 /전송02) 720-2033  
복지노동심의관실 과장 정하영 사무관 장영규 담당자

문서번호 국무사회 67400-20

시행일자 2002.03.21 ( 1년 )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			지	
람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공무원 불법노조 출범 기도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제 2002-3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하여 여러가지 획기적 조치들을 취하여 왔으며, 공무원의 근로에 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서도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제1단계로 지난 1999년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허용한 바 있고, 제2단계로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하기 위해 연내에 이를 입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노사정 위원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침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협의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외부 민간 노동단체와 연계하여 당장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들을 강행함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이러한 시도가 있었고, 오는 24일에도 또하나의 불법노조 출범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들은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단결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될때까지 실정법의 테두리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기도하면서 이를 위한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전 공무원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조결성을 추진중인 공무원 여러분은 지금 즉시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합니다.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와의 협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 할 때에는 정부는 부득이 여러분들을 징계와 사법처리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바입니다.

2.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잘 설명하여 이들이 불법노조 결성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설득하는 한편,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불법노조 결성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는 공무원 불법노조 결성을 위한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 무 총



수신처 가01~11, 21~31, 41~58, 71~86, 나01~07, 10~18, 161~18